

문서번호	감사실-4666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8.08.30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134호

선임	팀장	감사실장	감사직무대행	이사장
협 조				

---

**-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 개정 관련 -  
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(안)**

---

2018. 8.

#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(안)

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·시행코자 함.

※ 기획조정실 심의 및 사규개정예고('18. 8. 22. ~ 8. 27.) 완료

## I 추진 방향

### ○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 준용

- 관련근거 : 『“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” 전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』  
(市 조사담당관-11719('18.08.06.)호)

## II 개정(안) 주요내용

### ①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방법 등 구체화 (안 제6조의5)

- 이해관계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 후 5일 이내 서면 신고

### ②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 규정 (안 제15조)

-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“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”의 범위 구체화

### ③ 수수 금지 예외인 경조사비·선물의 가액 범위 변경 (안 제17조)

- 경조사비의 경우 현행 5만원 유지하되, 축의금·조의금 대신하는 화환·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
- 선물의 경우 현행 5만원 유지하되,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)인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허용

### ④ 외부강의 신고대상 예외 규정 (안 제21조)

-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·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

### 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 변경 (안 별표1)

- 직급 무관 1시간 최대 40만 원으로 변경

### Ⅲ **향후 추진일정**

- 방침수립 : ~`18. 9. 3.
- 공포의뢰(→기획조정실) : ~`18. 9. 4.
- 공포·시행 : ~`18. 9. 5.

따로붙임 : 1.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(신·구조문 대비표 포함) 1부.  
2.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규정 전문 1부. 끝.